



제428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신설〉

■ 남인순의원·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134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개요	1
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4
나. 심리상담 활성화 필요성 및 제도적 현황	6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신설의 의의 및 총괄적 쟁점 ...	12
라.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15
2. 조문별 검토	19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9
나. 자격(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27
다. 자격심의회위원회,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35
라. 등록 및 법인의 설립(안 제12조, 제13조)	41
마. 의무(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44
바. 협회(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46
사. 부칙	50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안자 : 남인순의원 · 김예지의원등 22인
- (2) 제안일 : 2025. 6. 27.
- (3) 회부일 : 2025. 6. 30.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자격관리원을 둠(안 제4조).
-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 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2조).
- 사.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1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안조치 의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자.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II.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목적 및 조문 체계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정의(안 제2조)와 업무(안 제3조), ②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되기 위한 자격(안 제6조, 제7조), ③ 업무 개시를 위한 등록 절차(안 제12조), ④ 비밀 엄수의 의무(안 제15조), ⑤ 벌칙(안 제25조), ⑥ 자격 인정을 위한 특례(부칙) 등임.

< 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및 행복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제2조	정의	- 마음건강심리사, 마음건강상담사, 심리서비스,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 상담서비스, 상담 관련 검사 활용, 상담교육, 상담자문의 정의
	제3조	업무	-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 해당 자격증 없이 그 명칭 표방하여 업무 수행 금지

		조 제목	주요 내용
	제4조	자격관리원	-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시험관리, 교육인증 관리 등의 업무 수행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자격 등	제6조	마음건강 심리사 자격	- 마음건강심리사 자격(1급 또는 2급) -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7조	마음건강 상담사 자격	- 마음건강상담사 자격(1급 또는 2급) -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8조	실무수련	- 국가시험 응시 전 받아야하는 실무수련 과정
	제9조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 및 징계 관련 심의
	제10조	결격사유	- 마음건강심리사나 마음건강상담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제11조	자격취소	- 자격 취소 요건
제3장 등록 등	제12조	등록 등	- 업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의무화
	제13조	법인의 설립 등	- 1급의 경우 법인 설립 가능하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제4장 의무	제14조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 품위 유지 및 법령에 따른 성실 업무 수행
	제15조	비밀 업무의 의무	- 전(前), 현(現)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및 전(前), 현(現) 사무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제16조	보안조치 의무	-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의 적절한 사용 보장 및 오·남용 방지 조치
	제17조	명의대여 등 금지	-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 자격증 대여 금지
	제18조	보수교육	-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
제5장 협회	제19조	한국마음건강 심리·상담사	-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협회 설치

		조 제목	주요 내용
		협회	
	제20조	협회의 가입의무	-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협회 가입 의무
	제21조	윤리규정	- 협회에게 직업윤리규정 제정 의무 부과
	제22조	징계	- 협회에게 회원자격 정지나 제명과 같은 징계권 부여
	제23조	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협회에 위탁 허용
	제24조	감독	- 협회에 대한 감독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명시
제6장 벌칙	제25조	벌칙	-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명칭 표방하여 업무를 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26조	과태료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칙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특례	- 이 법 시행 당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에 준하는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 인정

나. 심리상담 활성화 필요성 및 제도적 현황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고, 2위 국가인 리투아니아의 17.1명에 비하여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주요 자살 원인으로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33.4%를 차지하였음.

또한 2023년 연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약 268만명¹⁾에 이르며, 정신질환은 조기발견·개입 시²⁾ 약물 등으로 충분히 완치

1) 2023.1.1.~2023.12.31. 동안 정신의료기관에서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받은 실인원(치매 제외, 15세 이상)임.('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되거나 만성질환과 같이 관리 가능함에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적기의 치료 조치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조사 결과에서 보듯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조사 >

구 분	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	-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46.4%로, (1위)감정적 어려움 경험, (2위)치료 필요 경험, (3위)자살 시도 등 경험
정책적 필요도	-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경우는 89.5%로, (1위)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2위)정신건강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 자료: 보건복지부

유사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심리상담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³⁾되는 등 국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로,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2020년도의 경우 2011년 대비 6.9% 증가에 그쳐 실제적인 수요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하고⁴⁾,

2) 정신질환은 국민의 27.8%가 일생 중 한 번 이상 경험(국립정신건강센터, '21년)하지만, 상당수는 자연치유 혹은 가벼운 치료로 완치된다고 알려져 있음.

3) 2019. 7. 19. KBS 추적 60분에서,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심리상담소 개설 자격 기준 부재, 심리상담사 범죄행위 처벌 규제 미비,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심리상담소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10명 중 9명은 전문가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를 찾지 않는 이유 중 14.7%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서’였다고 조사된 바 있음⁵⁾.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더라도 적절한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⁶⁾.

□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⁷⁾에서는 ‘자격’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국가자격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으며, 민간자격에는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인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공인자격’이 있음.

4)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재인용

5)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재인용

6)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한국심리학회, 2020) 재인용

7)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자격의 구분>

구 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근 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법률	「자격기본법」	
개 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	
유 형	국가자격 중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자격	민간이 개발하 여 국가에 등 록한 자격
시 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직업능력연구원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자격증 체계에서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요 국가자격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교육부 소관으로는 전문상담교사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는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음.

<심리상담 분야 주요 국가자격 현황>

(2024년말 기준, 단위: 명)

		국가전문자격종				국가기술훈격종			
명칭	<정신건강전문요원>				장애인 재활 상담사	전문 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 심리사	직업 상담사
	정신건강 임상 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사	정신건강 직업 치료사					
소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초·중등 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국가기술훈격법」
관리	○자격관리: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관리: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수교육: 5개 국립병원 및 지역별 학협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직업치료사협회)					○시험관리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수교육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시험관리 : 교육부 ○교육연수 : 교육부	○시험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수교육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험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 소지자 수	·1급: 2,272 ·2급: 1,468	·1급 3,709 ·2급 6,119	·1급 3,264 ·2급 3,241	·1급 23 ·2급: 108	·1급: 3,798 ·2급: 1,947 ·3급: 88	통계 X	·1급 1,836 ·2급 16,122 ·3급 23,126	·1급 3,342 ·2급 20,539	·1급 2,178 ·2급 84,976
업무 범위	(공통)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재활·생활·직업 훈련, 정신질환자 및 가족 권익보장, 행정입원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상담정보 수집 ▲장애 진단·평가 ▲재활서비스 운영 ▲직무 개발 등 시행	▲학생 정신건강 및 복지 증진 ▲교우학습·진로·폭력예방 상담	▲청소년 문제 개입, 의뢰 등 ▲매체검사 및 심리검사	▲심리평가, 검사, 치료상담, 재활, 교육, 자문 등	▲직업소개, 직업관련 검사·해석, 직업상담
	▲심리평가·교육 ▲심리상담·안정	▲간호관찰/자료수집 ▲건강증진 기획·수행	▲사회서비스 등 조사, 지원 관련 상담	▲작업수행 평가, 작업치료, 교육 등					

*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도 다른 민간자격과 마찬가지로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공인자격과 그렇지 아니한 등록자격으로 구분⁸⁾

8)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할 수 있는데, 현재 심리상담분야 공인자격은 없으며, 등록자격의 경우에는 이 분야 우리나라 주요 학회로서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일반심리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이 있음.

<국내 주요 학회 발급 민간 자격증 현황>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 일반심리사	• 전문상담사 1급 • 전문상담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 임상심리전문가

*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그 외의 기관에서도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심리상담’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2025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심리상담 관련 민간등록 자격증은 총 3,828건이 검색됨.

예컨대,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자격증 현황만 보더라도, 노인심리상담사·실버심리상담사·노인미술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범주의 자격증이 30여 개의 기관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자격기본법」 제17조9)에 근거하여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고, 관계

9)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무부처도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등만 확인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임.

- 민간자격에 관한 이러한 상황은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0)에서 수련기관에서의 수련, 보수교육,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음.

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신설의 의의 및 총괄적 쟁점

- 제정안에 따라 신설하려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대학원 등에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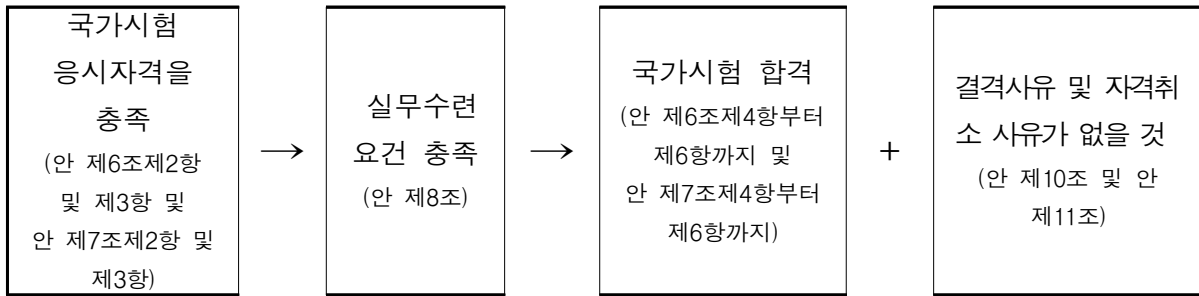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을 받은 후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실무수련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확보한 다음, 국가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가 없어야 함.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취득 절차>



이후에도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비밀엄수 의무 및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함.

제정안이 이와 같은 엄격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취득 절차와 업무 수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음건강과 관련된 다른 자격증 소지자보다 더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심리서비스 혹은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는 「변호사법」 11), 「공인회계사법」 12), 「법무사법」 13), 「공인중개사법」 14) 등이 있으

11)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인회계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나, 마음건강 분야의 국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례는 없으므로¹⁵⁾ 심리서비스 또는 상담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검증이 부실한 민간자격의 난립과 전문성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구분하는 심리학과 상담학이 갖는 학문적 차별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마음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평가·교육·자문의 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두 자격이 구체적 차별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직역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마음건강과 관련된 기존의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들과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한 기존 체계와도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법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 국가자격의 경우를 살펴 보아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장애인 재활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근거 법률은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초·중등교육법」으로서 마음건강만을 다루는 법률로는 볼 수 없음.

또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의 신설이 심리학이나 상담학 전공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학문의 세계에서까지 다른 전공자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교육 분야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하여도 경청할 필요가 있음.

라.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 및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내용은 서비스 제공, 평가, 교육, 자문 등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동 자격증이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자격관리 조직 운영, 업무개시 및 법인 설립 관리, 협회 감독 등을 담당하는 경우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이 국가자격화되어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기존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인정하려는 특례 조항은 인정 기준의 설정과 적용 과정에서 3천여개 이상에 달하는 민간자격의 반발과 직역간 참여한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 제9조의 위원회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인데, “자격관리원”도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도록 되어있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만 마음건강 관련 심리 및 상담 서비스 업무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

부처 및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p>의료법과 상충(의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체계 접근 지연)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적인 조기개입이 중요하나, 제정안은 정신의료체계와의 연계를 언급하지 않아 고위험군이 치료 시점을 놓치는 상황 발생 우려(의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의료적 접근(치료)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와의 협력·지시 체계 구축 필요 - 상담인력의 양적 확대는 오히려 의료적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우려 ○ (전문성) 제안된 자격 기준이 너무 느슨함. 대학(원)별 교육 수준에 편차가 있음에도 단순 학문적 수업 이수 통해 자격 취득 가능(의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수련시간의 상당 부분을 대학(원) 과정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충분한 임상경험 및 전문성 확보 없이 자격 취득할 우려 ○ (배타적 자격) 심리학·상담학 중심 자격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기존 국가·민간자격을 배제·불법화하여 <u>학문·직역 간 갈등 유발(공통)</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은 신체건강, 고용, 복지 등 영향 요인이 다양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나, 제정안은 심리사·상담사만을 인정해 이를 저해함 - 해외 대부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는 심리상담을 특정 전공(심리학·상담학)만의 독점적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음 ○ (기관·조직 신설) 자격관리원 및 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는 행정력·예산 낭비와 특정 학계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야기할 우려(공통) ○ (특례) ‘이 법에 준하는 자격’은 불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해석 <u>갈등 및 제도 혼선을 야기</u>하고, 특정 자격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할 우려(예술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담 전문가들의 자격·경력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구체적 특례 인정 기준 필요 ○ (입법절차) 다학제 전문가, 현장 실무자, 국민 등이 참여하는

부처 및 기관명	제정안에 대한 의견
	<p>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해야 함(공통)</p> <p>○ (대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적 지위*와 상담역량 강화(전문요원),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관리(국립정신건강센터)</p> <p>*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명시</p>

-
- 16) 지자체(광역3), 보건소(기초1),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4, 기초1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기초3), 안산마음건강센터,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 17)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국립정신건강센터
- 18)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민간상담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의회, 대한작업치료사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 19)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 20) 한국음악치료학회, 전국음악치료사협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사협회,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예술치료학회,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
- 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22) 대한임상심리사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국민의 마음건강 및 행복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안의 목적과,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등 제정안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및 행복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심리사”란 이 법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마음건강상담사”란 이 법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심리서비스”란 심리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 개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4. “심리평가”란 개인의 지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성격, 태도, 적응수준, 그 밖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심리검사와 함께 면담과 행동관찰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여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하는 절차적 행위를 말한다.
5. “심리교육”이란 심리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심리적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마음건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심리자문”이란 심리서비스 또는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여 심리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상담서비스”란 상담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마음건강 증진 및 생활적응을 위한 상담학적 개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8. “상담 관련 검사 활용”이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적절한 상담 관련 검사 도구를 선정하여 실시, 사정(appraisal)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상담교육”이란 상담학 지식과 원리에 관한 정확한 사실 및 개념을 교육하여 상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10. “상담자문”이란 상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여 상담학적 지식과 원리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효과적인 상담 성과 달성 또는 상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① 마음건강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서비스
2. 심리평가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제2항의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마음건강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서비스
2. 상담 관련 검사 활용
3. 상담교육
4. 상담자문
5. 제4항의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마음건강심리사가 아니면 마음건강심리사 명칭을 표방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고,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마음건강상담사 명칭을 표방하여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다.

□ 안 제2조에서는 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자격증에 대하여 정의하고 업무를 규정하는데, 각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짐.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정의와 업무 등>

	마음건강심리사	마음건강상담사
정의	이 법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업무	1. 심리서비스 2. 심리평가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제2항의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상담서비스 2. 상담 관련 검사 활용 3. 상담교육 4. 상담자문 5. 제4항의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비고	1급 또는 2급	1급 또는 2급

□ 양 자격증은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라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자문 등 파생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두 자격증을 별개의 자격증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컨대, 안 제2조제3호에서 “심리서비스”를 “심리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 개입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만으로 심리서비스의 관점에서 두 자격증을 별개로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상담서비스”의 정의²³⁾를 배제시킬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하여는

23) “상담학 관련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마음건강 증진 및 생활적응을 위한 상담학적 개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임.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²⁴⁾.

□ 입법취지가 두 자격증을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할 의도라면, 심리서비스는 상담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상담서비스는 심리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고, 두 자격증 사이에 연계 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²⁵⁾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하는 입법모델을 참고하여 제정법안 내에서 조문 체계를 수정²⁶⁾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3조제2항과 제4항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각 자격증이 1급과 2급으로 분류²⁷⁾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조문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또한, 제3호와 제7호에서는 서술어구를 “심리학적 개입을(상담학적 개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종결하고 있는데, 제정법안이 심리사와 상담사에 대한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의는 포함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에 따라 정의하고자 하는 법률용어가 포섭하는 범주에 신축성을 부여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모델로 보임.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26) 예컨대, 마음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을 먼저 신설하고, 그 하위 범주 자격증의 종류를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27)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시행 예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 안 제3조제1항제5호와 제3항제5호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의 업무 범위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의 업무를 각각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각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자체와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조제5항은 자격증이 없는 자가 ‘마음건강심리사’,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이 있음을 표방하여 각 자격의 고유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이 없이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하되,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이 있음을 표방하지만 앓는다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

이는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이 갖는 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예컨대 「자격기본법」에 따른 “심리사”, “상담사”로 끝나는 많은 민간자격 소지자들이 자신들을 ‘마음건강 분야의 심리사’, ‘마음건강 분야의 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마음건강상담사 또는 마음건강심리사 명칭을 표방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음²⁸⁾.

28) 예컨대,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유사한 명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각종 “심리사”, “상담사”로 끝나는 많은 민간자격 소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조(자격관리원) 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관리원(이하 “자격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격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시험관리
2. 교육인증관리
3. 실무수련인증관리
4. 보수교육

③ 자격관리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4조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자격관리원’을 두려는 것임. 다만, 안 제4조에 따르면 자격관리원은 국가시험관리나 실무수련인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다면 심의를 위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의의 역할은 안 제9조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자격관리원의 업무인 국가시험관리, 교육인증관리, 실무수련인증관리, 보수교육²⁹⁾ 등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증 취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서 설치와 운영 또는 자격관리원으로서의 지정이나 위탁 등 자격관리원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9) 자격관리원의 업무 중 ‘교육인증관리’가 보수교육과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제정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시험 응시요건으로서 ‘심리학, 상담학 관련 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에 대한 검증’을 뜻한다고 해석이 가능해 보이며, 이를 위하여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컨대, 신설의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³⁰⁾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입법례처럼 법률 자체를 제정하거나, 「지방공기업법」³¹⁾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입법례처럼 법률 내의 한 조문 형태로 기관의 설립 근거 및 수행하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4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격관리원의 업무 중에서 제2호 교육인증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제4호에서

30)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설립등기 사항, 수행하는 사업 등을 명확히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격관리원의 업무로서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는 국가 시험 응시 자격 관련 학과목 이수 검증 작업을 의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3호 실무수련인증관리 또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의 실무 수련 이수와 관련된 검증 작업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규정해야 할 것임.

□ 또한, 안 제4조에 따른 자격관리원을 두는 경우, 업무 수행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임³²⁾.

□ 안 제5조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이 신설되는 자격증에 대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의 법률임을 보여주고 있음.

32) 참고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우, 재원을 국가시험 등 실비 징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사업)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제15조(출연금)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자격(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과 국가시험, 실무수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6조(마음건강심리사 자격 등) ① 제2항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급 마음건강심리사의 자격을 갖고, 제3항에 따른 마음건강심리사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마음건강심리사의 자격을 갖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련시간은 석사의 경우 최대 1천시간, 박사의 경우 최대 2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2급 마음건강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마음건강심리사 업무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3.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석사학위 과정의 수련시간은 최대 1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마음건강심리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마음건강상담사 자격 등) ① 제2항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급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제3항에 따른 마음건강상담사 2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급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상담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련 시간은 석사의 경우 최대 1천시간, 박사의 경우 최대 2천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2급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마음건강상담사 업무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3. 제1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상담사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 과정의 수련시간은 최대 1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천 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사람. 이 경우 대학원 과정의 수련시간은 최대 1천 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마음건강상담사 1급 및 2급 국가시험의 과목·방법 및 실무수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와 동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을 가지게 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학위 취득 이후 일정 시간의 실무수련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안 제7조에서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 취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의 마음건강심리사와 유사한 구조임.

다만, 현행 심리상담분야 주요 국가자격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비교할 때,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나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경우는 학사 또는 전문학사 졸업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반하여, 마음건강심리사의 경우는 2급 자격의 경우에도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제2조에서 정의한 심리서비스·심리평가·심리교육·심리자문이 갖는 난도를 고려한 것으로서 해당 자격증의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음.

<심리상담 분야 주요 국가자격의 기준 현황>

		시험 유무	자격기준		
			1급	2급	3급
정신 건강 전문 요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X	(1) 석사(심리학)+3년 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3) 임상심리사 1급+3년 수련	(1) 학사(심리학)+1년 수련 (2) 임상심리사 2급+1년 수련	
	정신건강 간호사	X	(1) 면허 ³³ +석사(간호학)+3년 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3) 2급+정신간호 분야 조교수 5년 이상 근무	(1) 면허+1년 수련 (2) 정신전문간호사 자격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X	(1) 석사(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3년 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사회복지사 1급+1년 수련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X	(1) 면허+석사(직업치료학)+3년 수련 (2) 2급 후 5년 근무	면허 +1년 수련	
장애인 재활상담사		○	(1) 장애인재활 분야 박사 (2)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및 관련 학과 석사, 학사 (3) 2급 후 3년 근무 (4) 사회복지사+5년 근무	(1) 장애인재활 관련 학과 전문 학사 (2) 사회복지사+3년 근무	
전문상담교사		X	(1) 2급 이상 교원 자격+ 3년 경력+양성과정 (2) 2급 후 3년 근무+자격연수	(1) 상담·심리학과 졸업+교직학점 (2) 대학원(전문상담) 이수+석사 (3) 2급 이상 교원자격+양성과정	
청소년상담사 ³⁴⁾		○	(1) 상담관련 분야 박사 (2) 상담관련 분야 석사+4년 실무 (3) 2급 취득+3년 실무 (4)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전문학사 +2년 실무 (3) 학사+2년 실무 (4) 전문학사학위 +4년 실무 (5) 고등학교 졸업 +5년 실무 (6)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임상심리사		○	(1) 2년 실습수련 또는 4년 실무 (2) 2급 후 5년 실무 (3) 외국에서 동일 종목 취득	(1) 1년 실습수련 또는 2년 실무 + 대학졸업자(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 종목 취득	
직업상담사		○	(1) 2급+2년 실무 (2) 3년 실무	-	

*자료: 보건복지부

□ 자격증의 취득 과정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입법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국가시험 응시자격 충족 요건으로서 외국의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³⁵⁾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와 제7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 >

<p>「장애인복지법」</p> <p>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p> <p>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u>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u></p> <p>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p> <p>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

3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말함. 2급 자격증도 마찬가지임.

34) 청소년상담사는 1,2,3급으로 나뉘어짐.

35) 이는 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서 “상응하는 자격을 지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삭제 <2019. 12. 3.>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삭제 <2019. 12. 3.>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안 제6조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로 규정하면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학위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5항에서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학과·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어떤 사항을 위임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음³⁶⁾.

36) 추가적인 입법례로서 「공인회계사법」 제5조제4항은 공인회계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과목의 종류, 학점의 수,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을 열거하고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

- 한편, 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안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국가시험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고 그 관리를 자격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국가시험 자체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및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다른,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는 방안³⁷⁾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8조(실무수련) ①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관리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실무수련을 받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무수련 기간 동안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기관 및 실무수련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제3항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의 종류·학점의 수·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참고 입법례로 「장애인복지법」, 「법무사법」 등을 들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8조에서는 실무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수련을 받기 위하여는 자격관리원에 등록을 해야 하고, 실무수련은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 혹은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연속하여 이루어지므로 실무수련 등록 절차 역시 그와 맞물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실무수련 기간은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취득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실무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으로 보임³⁸⁾.

다만, 실무수련의 과정과 실무수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최근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련기관의 지정, 평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³⁹⁾을 참고하여 이와 유사하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8)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무수련 기간 동안 실무수련자는 자격증 소지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는 것은 지나친 규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다만,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방법·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방법과 제4항에 따

다. 자격심의위원회,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안 제9조부터 제11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9조(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
2.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징계와 관련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나 마음건강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제정안 전체에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증의 교부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점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동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22조에서는 징계권이 협회에 있는 것⁴⁰⁾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 입법⁴¹⁾를 참고하여

40)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제22조에서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결사 조직인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에게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음.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제22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1)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자격증 교부권자가 징계권을 갖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와 비교할 때, 특히 안 제10조제3호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측면에서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 복지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⁴²⁾는 제정안에서의 마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둔 회계전문가 1명
4. 공인회계사회 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이하 이 목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2)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유사 취지 법률에서의 결격사유 비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건강심리사나 마음건강상담사가 될 수 없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1. 피성년후견인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6.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안 제1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자격 유지에 불리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안 제9조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⁴³⁾.

□ 안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게 되는데, 「청소년 복지법」 제21조의2⁴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격취소 사항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17조에서는 단순히 자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게 하는 경우’ 또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자격 정지 사유가 되도록 규정해야 함.

또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명령’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자격 취소의 경우에만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례에 따라서는 자격 정지의 경우에도 청문⁴⁵⁾을 실시하도

43) 마음건강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서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마음건강심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격’은 자격의 획득뿐 아니라 유지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도 심의·의결 사항으로 보아야 함.

44) 「청소년 복지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5) 「건강검진기본법」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라. 등록 및 법인의 설립(안 제12조, 제13조)

- 안 제12조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1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2조(등록 등) 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제19조에 따른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법인의 설립 등) ① 1급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1급 마음건강상담사는 제3조의 업무를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을 개설 또는 해산하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소관 부처의 장관 등에게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⁴⁶⁾, 변리사⁴⁷⁾, 건축사⁴⁸⁾ 등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6)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업무 참여 현황 및 각 자격증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안 제12조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경우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자격임을 전제로 한 것임.

□ 다만, 안 제12조제1항은 업무를 개시하려는 때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후 폐업이나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라든지 등록 이후 주기적인 등록 갱신의 근거(49)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47) 「변리사법」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 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을 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과 제3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거부 사유로서 안 제12조제2항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자격취소 사유를 감안하여 범위를 확대⁵⁰⁾함으로써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더 엄격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해소 또는 치유된 이후의 재등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안 제13조는 1급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1급 마음건강상담사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 2급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2급 마음건강상담사에게 법인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는 2급 자격증 소지자들 간의 경쟁을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2급 자격증 소지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50) 등록거부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 5. 20.>

한편, 유사 입법례인 「법무사법」⁵¹⁾에서는 법인 설립을 신고 사항이 아니라 인가 사항으로 하고, 법인 설립의 목적을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라고 규정하며, 설립 절차와 구성원, 정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인에 대하여도 등록의무나 협회 가입의무 등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무(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안 제14조부터 제15까지는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마음건강 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업무 중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51) 「법무사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7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14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조(비밀 업무의 의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조(보안조치 의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7조(명의대여 등 금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조(보수교육)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업무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업무를 자격관리원, 제19조에 따른 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마음건강심리·상담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 대상,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15조는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정보인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정안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직무상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할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자격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점⁵²⁾을 고려하여 적절할 형량을 제정안에 명시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조문 제목은 보안조치 의무이지만, 그 내용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고객의 비밀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닌, 심리서비스 및 상담서비스의 적절한 사용 보장 및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입법 의도에 맞게 조문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안 제17조에서는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입법례⁵³⁾에 따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금지할 필요가 있음.

바. 협회(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3)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9.>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한국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 ①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마음건강심리·상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0조(협회의 가입의무)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윤리규정) ① 협회는 그 회원인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직업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인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마음건강심리사 또는 마음건강상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안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르면 협회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데,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 자격을 이원화하려는 총괄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둘을 분리하여 협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제1항에서 ‘전문성 및 품위유지,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라는 협회의 목적은 명시하였으나, 협회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유사한 입법례에서는 공제사업이나 감독기관에의 보고 등⁵⁴⁾을 주요 업무로 하는 등 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고 의무는 안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회를 감독⁵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음.

54) 「법무사법」

제67조(공제사업) ① 대한법무사협회는 제26조에 따른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共濟規程)을 제정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55) 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2조에서는 협회가 회원인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계의 사유로는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회칙으로 정한 사유만을 열거하고, 징계의 종류를 회원 자격의 정지나 제명만을 두고 있음.

다만, 다수의 입법례에서 징계권자는 자격증 교부권자와 일치시키고 있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 위반뿐 아니라 징계사유로서 윤리선언의 위반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징계의 종류도 가장 경미한 수준의 견책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으므로⁵⁶⁾, 이를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협회는 회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임⁵⁷⁾.

56) 예컨대, 「건축사법」에서의 징계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8. 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57) 「법무사법」

제48조(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사. 부칙

-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음건강심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마음건강심리사에 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마음건강심리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마음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이 법에서는 기존에 없던 자격증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의 정립, 국가시험 수행 기관의 설치, 실무수습 기관 지정 및 하위 법령 규정 등의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개정 2016. 2. 3.>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기에는 촉박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제정안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마음건강과 관련된 기존의 다른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고유한 명칭의 자격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처럼 다른 자격에 대하여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부칙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 ‘그 자격의 인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불명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특례 인정 기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례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⁵⁸⁾.

문 의 처
02)6788-5498

58) 구(舊) 「해사안전법」(현재는 「해사안전기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됨)의 입법례에서는 기존 특정 자격증 소지자가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신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 및 경과조치를 두었음.

「해사안전법」

[시행 2024. 1. 5.]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5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종전의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